

## 【 2 】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회비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

###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일자 2006. 5. 3.

제출자 정창범의원외2인

#### 1. 개정이유

-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 전념을 위해서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코자 개정하는 것임.

#### 2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
-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지침

#### 3. 주요골자

- 지방의원에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, 월정 수당 신설

※ 월정수당 :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

### 【 지방의원의 지급경비 체계 개정내용】

구 분	종 전	개 정
지급항목	의정활동비, 여비, 회기수당	의정활동비, 여비, 월정수당
지급기준 결정절차	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결정	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결정
결정기구		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6. 예산수반사항 : 따로 붙임
7. 기타참고자료 : 따로붙임
-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

## 양주시 조례 제 호

# 양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양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”  
을 “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 
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2조(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)①법 제32조
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  
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.

1.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: 별표1에 의한 금액

2. 여비 :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 금액

②여비의 지급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 
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한다. 다만, 의회의 회의 참

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조 및 제4조는 각각 삭제 한다

제5조는 제3조로 하고 본문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월정수당”로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【별표 1】

**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지급액 (제2조제1항관련)**

(단위:원)

의정 활동비(월액)	월 정 수 당(월액)	합 계(월액)
1,100,000	1,600,000	2,700,000

【별표 2】

**국내여비 지급액 (제2조 제1항 관련)**

(단위:원)

구 분	지급기준액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인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
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	

비 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현지활동 및 여행(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)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.

2.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르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【별표 3】

## 국외여비 지급액(제2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등 급	항공운임	일 비 (1일당)	숙박비 (10야당)	식 비 (1일당)	준 비 금		
						15일 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 이상
의부의장	가	1등정액	35	166	107	140	170	195
	나		35	120	78			
	다		35	92	58			
	라		35	79	49			
의원	가	2등정액	30	145	81	130	155	180
	나		30	95	59			
	다		30	70	44			
	라		30	62	37			

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·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) 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 ·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900,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200,000원으로 한다.</p> <p>②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양주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월정수당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)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: 별표1에 의한 금액</p> <p>2.여비 :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 금액</p> <p>②여비의 지급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한다. 다만, 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3조(회기수당) ①회기수당은 회기 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기수당을 지급한다.</u></p> <p><u>②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,000으로 하되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</u></p>	<p>제3조(회기수당) &lt;삭제&gt;</p>
<p><u>제4조(여비)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②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 ③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</u></p>	<p>제4조(여비) &lt;삭제&gt;</p>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, <u>회기수당</u>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 여는 양주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 다.	제3조(준용) ----- ----- <u>월정수당</u> ----- ----- -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 
은 이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【별표 1】(신설)

## 의정활동비 · 월정수당 지급액

(단위:원)

의정 활동비(월액)	월 정 수 당(월액)	합 계(월액)
1,100,000	1,600,000	2,700,000

【별표 2】

## 국내여비 지급액 (제2조 제1항 관련)

현 행							
• <u>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</u> (단위:원)							
구분	지급기준액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현지교통비(1인당)	숙박비(1인당)
의장·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의원	2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25,000	18,000

개 정 안							
• <u>별표 2 국내여비 지급액</u> (단위:원)							
구분	지급기준액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현지교통비(1일당)	숙박비(1일당)
의원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
【별표 3】(신설)

## 국외여비 지급액 (제2조 제1항 관련)

현 행	개 정 안
• <u>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</u>	• <u>별표 3 국외여비 지급액</u>